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02호
2. 발 의 자 : 장상기 의원 외 10명
3. 발의일자 : 2020. 5. 25.
4. 회부일자 : 2020. 5. 29.

### II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1.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조).
2.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갈등조정협의회에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4.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장상기 의원 외 10명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1502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 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법령과 교육청의 갈등해결 체계

###### 1) 법령 체계

- 오늘날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행정기관 간에 이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2월 12일 중앙 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는바,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전국의 12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sup>1)</sup>

다만,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가 전무한 반면 교육행정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상황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동 조례안의 제정은 교육행정영역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2) 교육청의 갈등해결 체계

- 현재 교육청의 갈등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교육청은 정책안전기획관의

---

1) 서울특별시도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정책조정담당팀에서 ‘갈등·리스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 차원에서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 ‘갈등진단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등상황을 예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육청 갈등관리 업무 프로세스]

추진업무	추진부서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전 검토항목 운영</li> <li>· 갈등·리스크 진단</li> </ul>	사업부서	· 갈등관리 운영의 실질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국장 회의 보고</li> </ul>	사업부서 정책·안전기획관	· 갈등·리스크 가능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관리</li> </ul>	사업부서	· 사후관리, 갈등예방 모니터링 등 실시

#### ❖ 갈등·리스크 관리 목록

- ①학교설립 ②진학관리 ③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④교직원 임용 ⑤사학관리  
⑥청렴대책 ⑦교직원관리

○ 이는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별도로 조직하여 갈등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매우 비교되는 상황으로, 서울특별시는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을 별도로 두고 하부조직으로 갈등조정팀과 갈등관리팀을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sup>2)</sup>

그러나 교육청은 매년 다양한 갈등상황이 촉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p>3)</sup>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담부서의 구성, 갈등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sup>4)</sup>

2) 서울특별시는 조례와 「갈등관리 매뉴얼」(2018)에 따라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영향분석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3) 무상급식 실시, 역사교과서 개편, 특수학교 설치, 자사고 폐지, 누리과정 지원,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의 구체적인 갈등사례는 [붙임1] 참고.  
4)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 갈등관리 종합 방안 TF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갈등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동 조례안이 갈등영향분석 실시(안 제5조), 갈등조정협의회(안 제7조)의 구성 등을 규정한 것은 교육청의 갈등관리 기본체계를 확립하여 교육영역에서의 갈등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의 총론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정책의 기대효과와 갈등유발 요인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교육갈등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 사안별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0조는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 등의 조사·연구 등에 갈등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는 효율적인 갈등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은 내용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교육청 조직개편과 전담부서의 설치

- 다만 동 조례안에는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과 연동하여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차후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특별시와 같이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995, 2020.5.29.)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현재까지 야기된 교육갈등 유형별**

**정리자료**(역사교과서, 학교비정규직, 자사고폐지, 외고폐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등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

서울교육 갈등관계 유형(서울교육 갈등·리스크 관리 tf검토보고서)

**유형화 1** 【국가 - 시민사회】 유형화

- 2010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후 시민사회 및 국가와의 갈등 양상이 전면화 됨
- 국가와 우리교육청 갈등관계가 시민사회 내부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등 시민사회와 우리교육청 관계가 국가와의 관계 안에도 투영됨

갈등관계 영역	사례
교육청 ↔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갈등</li> <li>○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li> <li>○ 관광진흥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li> <li>○ 누리과정 예산갈등</li> <li>○ 전교조 법외노조 갈등</li> </ul>
교육청 ↔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갈등</li> <li>○ 영훈국제중 비리/특혜 갈등</li> <li>○ 9시 등교 정책추진 갈등</li> <li>○ 촌지근절 홍보 동영상 갈등</li> <li>○ 친일인명사전 배포 갈등</li> <li>○ 혁신교육지구 갈등</li> <li>○ 강서2학군 중학교 배정 갈등</li> <li>○ 하나고 입시부정 및 특혜의혹 갈등</li> <li>○ 유치원 원아모집 갈등</li> <li>○ 성일중 발달장애인센터 갈등</li> <li>○ 공익제보교사 보호 갈등</li> <li>○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둘러싼 갈등</li> </ul>

**유형화 2** 【시민사회 vs 시민사회】 유형화 : 정책레짐(regime)<sup>5)</sup> 갈등

- 정책 옹호 또는 반대하는 집단이 다른 정책 갈등 구도에서도 반복 출현
- 이는 개별갈등이 아닌 교육정책 레짐(Policy regime)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옹호연합과 정책반대연합의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5) 레짐(regim) :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을 말하며, 인간의 행태나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 제공(이종수, 2009)

갈등관계 영역	사례
정책옹호연합(전교조) ↓ 정책반대연합(교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갈등</li> <li>○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li> <li>○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갈등</li> <li>○ 누리과정 예산 갈등</li> <li>○ 친일인명사전 배포 갈등</li> </ul>

**유형화 3** 개별사건에 대한 [집단 vs 집단] 유형화

- 교육정책 레짐과 무관하게 개별 사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시민사회 갈등이 존재
- 교육청이 갈등 형성자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관리자이자 정책 중개자(policy broker)로서 역할을 부여받음
- 이 유형화의 특징은 시민사회내의 다원적 이해관계의 갈등이 우리교육청과 국가의 갈등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점

갈등관계 영역	사례
다원적인 이해관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일중 발달장애인센터 갈등</li> <li>○ 유치원 원아모집 갈등</li> <li>○ 강서2학군 중학교 배정 갈등</li> <li>○ 9시 등교 정책추진 갈등</li> </ul>

**유형화 4** 【교육행정 vs 서울시 교육주체】 유형화

-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임
- 위와 같은 특성으로 타 기관 및 서울시 등과 수평적 갈등관계 발생

갈등관계 영역	특징
교육청 ↓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교육청의 경우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청의 갈등관계와 비교한다면, 수평적인 연결구조(서울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간은 갈등강도가 비교적 약함</li> </ul>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 1. 22.,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장 보칙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